# (주) 합양

(135-200)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653번지 한양수자인 성남마크뷰 분양사무소(전화)1522-6049,(팩스)031-748-9340

문서번호 : 분양마케팅기안시행 제 2018 - 0158 호

2018. 7. 11

수 신: 대한체육회(교육복지부)

참 조: 업무담당관

제 목 : 성남마크뷰 아파트 특별공급 계획 요청의 건

1. 귀청(부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- 2. 당사는 2018년 8월 16일(목) 예정,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2622번지 일대, 한양수자인 성남마크뷰 총 711세대 중(금광3구역 주택재건축)일반분양 255세대의 아파트 분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.
- 3. 이에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및 배정내역을 확인바라며, 기관추천 명단을 2018년 8월 10일(금) 17:00시까지 아래 담당자에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· 래-

가. 근무처 : 한양수자인 성남마크뷰 분양사무소 (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653번지)

나. 담 당 : 유상연 과장

다. 연락처 : 031-748-9431, 1522-6049, (FAX)031-748-9340

라. 이메일 : ricardo50ysy@daum.net / dionysos210@naver.com (수신 오류 등 감안하여 상기 두 개소 e-mail로 추천서류 부탁드립니다.)

- 마. 기 타 : 특별공급 청약일정 2018. 8. 21.(화) 예정
- ※ 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수 및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사업진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.
- ※ 공급수량에 경쟁이 있을 경우 성남시 거주(연속 1년거주 이상) 신청자가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함.

붙임.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안내문 및 배정내역(추천양식). 끝.

한양수자인 성남마크뷰 분양사무소장 (직인생략)

# 한양수자인 성남마크뷰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안내문

■ **단지명** : 한양수자인 성남마크뷰

■ 공급위치 :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2622번지 일원

■ 공급규모: 아파트 지하4층, 지상 11~25층 7개동 총 711세대 중 일반분양 255세대

- 기관추천 특별공급 (우수선수) 세대수

| 구분    | 40 m² | 50 m² A | 50 m² B | 59 m² A | 59 m² B | 74 m² | 계    |
|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|
| 배정 세대 | _     | 1 세대    | _       | _       | _       | _     | 1 세대 |
| 예비 추천 | _     | _       | _       | _       | _       | _     | _    |

- ※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시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우선공급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, 거주요건 우선순위가 계약 또는 서류접수 시 증빙서류와 상이 할 경우 부적격 당첨 됩니다.
- ※ 배정세대에 대한 추천 및 예비 추천 세대수에 맞게 대상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■ 신청자격

- 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5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 지역인 <u>성남시 1년 이상 거주</u> 하여 해당 기관에서 추천하여 당사에 통보한 분
- ②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3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<u>무주택세대구성원</u>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추천하여 당사에 통보한 분

#### ※ 무주택세대구성원 ※

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세대원(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.)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

- 가.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.
- 나.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·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
- 다.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
- 라.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
- 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8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납입금액 요건을 갖추신 분(청약통장 가입후 6개월 경과, 예치금 200만원 이상인 자)
- (단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8조에 의거 '국가유공자', '보훈대상자', '장애인'의 경우 입주자저축 요건 의무 없음.)
  - ① 청약예금 :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지역별, 면적별 예치금액이 이상인 자
  - ② 청약부금: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 인정금액이 85㎡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기준 지역별,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
  -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기준 지역별, 면적별 예치금액이 이상인 자

## 한양수자인 성남마크뷰 청약예금의 예치금액

| 구 분                | 성남시/경기도 | 인천광역시   | 서울특별시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전용면적 85㎡ 이하        | 200만원   | 250만원   | 300만원   |
| 전용면적 102㎡ 이하       | 300만원   | 400만원   | 600만원   |
| 전용면적 135㎡ 이하 400만원 |         | 700만원   | 1,000만원 |
| 모든면적 500만원         |         | 1,000만원 | 1,500만원 |

- ※ 본 아파트는 전용면적 85㎡이하의 주택형에만 신청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
- ・입주자모집공고일(2018. 8. 16. (예정))현재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(특별공급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)

#### ■ 유의사항

- ·정부의 방침에 따라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시어 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.
- ·해당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(접수)일에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을 정상 접수하셔야 합니다.
- ·사업주체에 최종 통지된 대상자는 통지시 기재된 주택형으로 금융결제원에 신청내역을 등록함에 따라 청약자 임의로 주택형 변경 등 추천내역과 상이하게 청약접수가 불가합니다.
- •기관추천 기준에 따른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주체에 통지된 대상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.
- •인터넷 청약접수 마감시간 17: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 접수 중이라도 접수가 종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· 당첨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체결전 서류확인 및 관계기관의 전산검색을 통해 성남시 거주요건, 과거당첨사실, 주택소유사실 등 입주대상자 및 세대원의 자격확인을 통해 부적격 사항 확인시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.
- ·예비추천자는 주택형별 접수현황에 따라 추가당첨자로 선정 또는 특별공급 통합예비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, 특별공급 통합예비당첨자로 선정시 예비순번이 결정됩니다.

#### ■ 신청기한

#### ·2018. 8. 10(금) 오후 5시 까지 기관추천 대상자 명단 회신 요청드립니다.

사업주체에서 추천대상자 명단을 금융결제원에 등록(미등록시 청약불가) 마감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관계로 회신 요청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.

대상자 통보: 해당 기관에서는 특별공급 대상자를 신청하여 붙임2 특별공급 대상자 명단 양식을 사용하여 회신일 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간 내 미 통보시 특별공급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예정이오니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■ 특별공급 일정안내

- ① 입주자 모집공고(예정): 2018. 8. 16. (목) 예정
- ② 견본주택 오픈일(예정): 2018. 8.17.(금) 예정
- ③ 청약접수 신청일(예정): 2018. 8. 21. (화) 예정
- ④ 특별공급 신청 장소 : 금융결제원 홈페이지(www.apt2you.com) 온라인 청약 접수 (08:00~17:30)
- ⑤ 당첨자 발표일(예정): 2018. 8.30.(목) 예정
- ※ 정부의 방침에 따라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 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.
- ※ 상기 일정은 분양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, 일정 변경 시 추후 재 통보 예정

#### ■ 위치도



# 한양수자인 성남마크뷰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배정내역(추천양식) - 양식

| <b>조태취</b> |    |      |     |             | 거주            | 요건           |    |        |
|------------|----|------|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|--------|
| 주택형<br>(㎡) | NO | 유형   | 성명  | 주민등록번호      | 연락처           | 성남시<br>1년 이상 | 기타 | 주소     |
| 50A        | 1  | 우수선수 | XXX | XXXXX-XXXXX | XXX-XXXX-XXXX | 0            |    | 등본상 주소 |
|            |    |      |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|        |

- ※ 각 주택형별 배정 세대수에 맞게 추천인 명단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예비추천인 명단도 동시에 추천 바랍니다. (예비추천인 명단 배정시)
- ※ 2018. 8. 10(금) 오후 5시 까지 기관추천 대상자 명단 회신을 요청드리며, 기간 내 미 통보시 특별공급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예정이오니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 한양수자인 성남마크뷰 특별공급 배정현황

## 1. 배정현황

| 주택형        | 약식  | 총공급수 | 일반분양 |      |     | 특별공급 |     |     |
|-------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|-----|
| 구작용        | 74  | 8897 | 20E8 | 기관추천 | 다자녀 | 신혼부부 | 노부모 | 계   |
| 40.95(40)  | 40  | 59   | 33   | 3    | 6   | 12   | 2   | 23  |
| 50.48(50A) | 50A | 180  | 103  | 22   | 18  | 36   | 5   | 81  |
| 50.48(50B) | 50B | 6    | 3    | _    | 1   | 1    | _   | 2   |
| 59.98(59A) | 59A | 3    | 2    | _    | _   | 1    | _   | 1   |
| 59.73(59B) | 59B | 5    | 4    | _    | _   | 1    | _   | 1   |
| 74.89(74)  | 74  | 2    | 2    | _    | _   | -    | _   | _   |
| Я          |     | 255  | 147  | 25   | 25  | 51   | 7   | 108 |

|    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| 타입별 세대수(예비자) |     |     |     |    |        |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|--------|--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Т Е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 50B | 59A | 59B | 74 |        | 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애인              | 1(1) | 10(6)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| 11(7)  | 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가유공자 등(국가보훈처추천) | 1(1) | 4(2)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| 5(3)   | 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  | 1    | 1(1)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| 2(1)   |  |
|    | <b>배정</b> 일반(기관추천)<br>특별공급 | 의사상자             |      | 1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| 1      |  |
| 배정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북한이탈주민           |      | 1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| 1      | 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납북피해자            |      | 1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| 1      | 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위안부 피해자          |      | 1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| 1      | 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우수선수             |      | 1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| 1      | 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우수 기능인           |      | 1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| 1      | 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소기업 근로자         |      | 1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| 1      |  |
|    | Э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3(2) | 22(9)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| 25(11) |  |

## 2. 관련자료

|        | 구분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| 근거자료   |  |  |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|--|--|--|
|        | 장애인               | 11(7) |        | 제36조(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)   |  |  |  |
|        | 국가유공자 등 (국가보훈처추천) | 5(3)  |        | 사업주체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  |  |  |  |
|        |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   | 2(1)  |        |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          |  |  |  |
| 일반     | 의사상자              | 1     |        | 세대구성원(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|  |  |  |
| (기관추천) | 북한이탈주민            | 1     | 05(11) |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 |  |  |  |
| (10%)  | 납북피해자<br>위안부 피해자  | 1     | 25(11) | │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 │<br>│(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 |  |  |  |
| 25세대   |                   | 1     |        |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
|        | 우수선수              | 1     |        | 다만,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는  <br>  15퍼센트, 그 외의 지역에서는 20퍼센트의 범위에서 |  |  |  |
|        | 우수 기능인            | 1     |        | 특별공급할 수 있다.  |  |  |  |
|        | 중소기업 근로자          | 로자 1  |        | <개정 2018.5.4.>   |  |  |  |

- ※ 상기 배정세대 및 예비추천인은 각 기관에서 본 사업주체에 통보시 특별공급 대상자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- ※ 예비추천인의 경우 각 타입별 40%(소수점 이하 절상)의 비율로 배정되었으며, 각 기관별 예비추천인 배정은 사업주체에서 임의배정함을 알려드립니다.